

일본 사회복지전문교육과 아시아형 소셜워크 교육의 글로벌스탠다드

—사회 발전의 촉매로서의 소셜워크—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회장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

大橋 謙策 (오오하시 켄사쿠)

(시작 하면서)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를 지향하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와 우측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제도의 촉에 20 세기에 발전한 「복지국가」 모델은 21 세기에 사회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아시아국가에 있어서 통용되지 않을까.

「사회의 제도」로서 발전해온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사회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노동력의 확보와의 관계가 끊임없이 문제시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가 역사적으로 대응해 온 구빈문제는 경제시스템의 구조속에서 논의 되어졌다기 보다는 경제시스템외의 잔여모델로서 여겨져 왔다. 거기에서는 사회복지는 경제의 종속물이며, 경제발전이 없으면 사회복지의 충실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과연 그런 것일까.

21 세기의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 철학은 그런 “구빈시스템”의 질곡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사회발전의 철학, 새로운 사회시스템 만들기의 철학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 자신이 새로운 사회시스템 만들기에 필요한 사회철학과 지배권(governance)을 학습하고, 행정과 주민이 협동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전문직에게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주민과 행정의 협동을 진척 시킬 촉매기능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는 이번 테마 「아시아형 소셜워크교육의 글로벌스탠다드와 일본의 사회복지전문교육」에 대해서 ①새로운 철학에 근거하여 사회발전, 사회시스템 만들기의 필요성과 소셜워크, ②아시아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근거한 사회발전과 그 촉매기능으로서의 소셜워크, ③아시아형 소셜워크교육의 글로벌스탠다드의 구축과 일본의 사회복지전문교육에 대해서 고찰한다.

I. 「복지국가」의 “흔들림”과 새로운 사회시스템만들기 — 주민의 복지교육의 필요성

(1) 한국가의 소셜워크보장 및 「복지국가」의 “흔들림”과 새로운 사회철학· 정치시스템

20 세기의 「복지국가」 모델은 고용자의 소득보장을 주요 과제로 한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발전해 왔다. 그 「복지국가」 모델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금후,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복지국가」 모델을 회구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선진국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온 정치기구나 사회시스템을 전제로, 또한 그들의 문화· 구조상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걸어온 시간을 투자할 여유는 없다. 따라서, 국가관여의 정도를 강화하고 국가정책으로서 행정책임이 전면적으로 추궁되는 시책으로서, 또한 그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중장비”라는 방책으로 전개하려 한다면 그것은 과연 가능할까?

현재와 같이, 노동력의 단기, 장기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금융, 무역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화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래와 같이 그 국가에서의 산업구조나 고용형태가 자기완결적으로 이루어져,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한국가소셜보장(사회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문제로서 영국의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역사를 배울때에 구빈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블란터리섹터(voluntary-sector)와 행정과의 관계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1601년에 「Statute of Charitable Uses」가 제정 되었고, 블란터리섹터의 기부금 공제가 인정 되었다. 또한 베버리지는 1948년에 「Voluntary Action」을 제출하고, 정부에 의한 사회보장 정책만으로는 사회 발전은 없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는 경제발전이 없으면 사회복지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해 왔다. 최근 10년, 영국에서는 「제3의 길」이 정책적으로 채택되어 사회통치나 사회포함이 큰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나 새로운 동향속에서 앞으로의 아시아형 사회복지발전 모델을 발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제 6의 사회서비스로서의 퍼스널소셜서비스의 필요성

영국에서는 1968년에 시범보고서가 발표되고, 국가레벨의 사회정책, 사회서비스로 해결 할 수 없는 고령자 등의 퍼스널소셜서비스를 전개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이 지적 되어, 「제6의 사회서비스」로 불렸다. 커뮤니티케어의 전개는 소득보장을 하는 국가레벨의 사회정책, 사회서비스와는 달리, 지방자치체레벨의 전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1970년에 「지방자치체사회서비스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체에 사회서비스부를 설치하고 퍼스널소셜서비스를 전개했다. 동시에 1969년의 에이비스보고서에서도 커뮤니티케어에는 근린주민이나 자원봉사자의 협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퍼스널소셜서비스를 전개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사고방식과 그 실천은 소셜 워크의 사고와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한국, 중국과 같이 급격히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소득보장을 축으로한 사회보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퍼스널소셜서비스의 정비가 급후 큰 과제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에서는 산업구조도 급격히 공업화 되고, 그와 동시에 도시화가 극심 해지고, 농업을 산업구조의 중핵으로 해온 사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에서의 친족에 의한 연대, 상호부조의 구조가 붕괴되어, 의식적으로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서 퍼스널소셜서비스를 전개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퍼스널소셜서비스의 정비는 종래 사회보장제도가 논의해 온 경제발전과 국민 소득과 사회보장과의 관계와는 다른 논의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발전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 사회철학과의 관계속에서 보다 제도 설계를 생각 하지않으면 안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퍼스널소셜서비스의 전개에는 국가레벨의 통일적 제도 설계보다도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여야 하고, 지방자치체도의 정비와 지방자치체의 권한위양이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이 요구된다. 또한 퍼스널소셜서비스의 전개에는 행정에 의한 제도화 된 서비스만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고, 어떻게든 근린주민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원조가 필요하게 된다. 재가 복지서비스를 축으로 하고 또한 근린주민에 의한 인포멀서비스나 소셜서포트네트워크와의 유기적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복지의 사고방식과 그 추진 시스템이 중요하게 된다. 그 때문이라도 새로운

사회시스템만들기를 향해서 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을 개혁·향상 시키는 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의 추진과 신뢰·협동·상호교환에 근거한 복지커뮤니티 만들기가 큰 과제가 된다.

아시아의 국가에는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 이후, 협동해서 개발해 온 커뮤니티·베이스드·리허빌리테이션을 표방한 「국제장애인해아시아·태평양 10년」의 실천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아시아가 자랑할 만한 실천이며, 유럽형과 다른 모델로서 발전 시키고 싶은 것이다.

(3) 새로운 사회시스템에 필요한 “박애” 정신의 함양과 복지교육의 추진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를 뛰어 넘어, 안정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온 종래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활동, 행동을 사회적으로 의식화시켜, 그것이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 했는가, 게다가 그 전통적인 행동이 새로운 사회상황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정확히 총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시아와 같이 문순지대(계절풍지대)의 벼농사를 산업구조의 기반으로 문화, 생활양식, 사회관계를 만들어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위에 전통적인 의식과 행동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사회시스템에 필요한 가치, 의식으로서 “박애” 정신의 함양과 그것을 추진하는 주민의 학습과 주민에 대한 복지교육이 요구된다.

“박애” 라는 사고는 프랑스에서 신분차별과 불평등한 봉건사회를 개혁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증하는 사회시스템에 필요한 사회철학으로서 등장 했다. 1793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공적 구제는 사회의 신성한 책무의 하나다” 라고 규정한 사고방식은 국민이 봉건사회를 개혁하고, 스스로 자유와 평등을 취득하고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박애” 라는 이념이 개인의 규범으로서도 사회규범으로서도 필요하며, 그 규범을 몸에 익히기 위해 공적 교육, 특히 성인의 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하는 사고를 중시했다.

1985년에 유네스코는 『학습권선언』을 채택했다.

『학습권선언』

학습권을 계승여부는 인류에게 있어 지금까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학습권이란, 읽고 쓰는 권리이며, 끊임없이 묻고, 깊이 생각하는 권리이며, 창조하고 상상하는 권리이며, 자기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엮는 권리이며, 모든 교육의 수단을 얻는 권리이며, 개인적·집단적 역량을 발휘 시키는 권리이다.

학습권은 미래를 위해 따놓는 문화적 사치품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느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욕구가 채워진 후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권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수단이다. 만일, 세계의 사람들이 식량 생산이나 기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세계의 사람들은 학습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여성이나 남성이나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학습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배우고, 서로 이해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학습” 이야말로 키워드이다.

이 『학습권선언』의 사고방식 이야말로, 프랑스의 “박애” 정신을 구현화시킨 공교육의 이념 그것

이다. 다양한 분야에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진 중에 한국가소설보장시스템의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 “박애” 정신을 함양하는 주민학습과 복지교육을 추진 시킬 필요가 있다.

II. 지역자립생활지원에 있어서 문화의 의미와 사회발전의 촉매로서의 소셜워크

(1)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지원에 있어서의 문화의 위치와 소셜워크

앞으로의 일본의 사회복지도 아시아국가들의 사회복지도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축이 된다. 그 경우,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원조의 사고방식을 가져다 사용하게되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대개인으로서의 클리닉케어프로치가 그런 것처럼, 가족·친족관계나 지역에서의 근린관계도 포함한 어세스먼트와 원조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지역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는 경우, 주택, 생활기술능력, 노동능력도 시야에 넣어서 어세스먼트와 원조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처럼 퍼스널소셜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회복지의 목적이 구빈시스템에서 벗어나, 노말라이제이션과 사회포함을 지향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금후 더욱 더 지역자립생활지원이 메인스트림이 된 이상, 소셜워크에 있어서 문화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문순지대에서는 역사적으로도 현재로서도 벼농사가 산업구조의 주축이며, 그것이 유럽·아메리카와는 다른 사회특성과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러한 산업구조는 생활권역과 생산권역과의 동일성을 강화시키고, 지역에 있어서 주민의 강한 토착성과 공동성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벼농사라는 산업구조는 자연에 좌우되는 정도가 크고, 결과적으로 자연과의 동화의식이나 자연과 인간과의 일체적 우주관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자연과의 엄격한 대립·극복을 원하지 않고, 타인과의 대립보다도 공존을 도모하는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활의 모든 면에서 계약을 생각하는 문화는 주민의 생활에 익숙치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소셜워크에 있어서 문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시아의 국가들은 문순지대의 벼농사가 산업구조의 주축을 이뤄왔다는 점은 같지만, 그 국가의 종교는 다양하며,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한 문화, 종교의 상황에 근거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시스템에 필요한 주민 사회복지 의식 개선의 방법과 지역에 있어서 상호부조의 방법, 제도적인 커뮤니티케어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연구하고, 유럽형모델과는 다른 아시아형 커뮤니티소셜워크모델을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2) 사회발전의 촉매로서의 소셜워크

소셜워크는 생활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생활문제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그 사람의 생육력과 생활환경, 사회환경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사회관계의 객체적 측면만 착안하는 일반적인 정책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을 문제로 하는 개인적 원조가 중요하다. 확실히 소셜워크는 사람에게 연결되고, 사회자원과 연결되고·연결시키고, 때로는 사회개선활동과도 연결되면서

사회의 속에서 불합리와 부정의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향하는 실천이다. 소셜워크란 문제와 서비스(사업)와 사람을 연결시키고, 코디네이터 하는 실천이다. 라고 한다면, 소셜워크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철학의 도입이나 보급면에서도, 새로운 사회시스템 만들거리에 있어서도, 또는 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의 변화과 증진을 향한 주민의 학습 및 복지교육면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아시아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많고, 그들 국가들의 향후 발전 방법을 생각한 경우, 경제발전도상주의가 아니라 또한 기존의 문화나 사회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철학과 사회시스템의 도입을 전통적인 문화 등과의 밸런스를 맞추며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때에 소셜통치와 소셜자본 이라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이념과 함께 그 구현화가 요구되지만, 그 구현화의 척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의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가 일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 커뮤니티소셜워크 기능에 요구된다. 그것은 경제외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위치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뿐만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의 도모를 염두로 한 「복지마을 만들기」에 이어지는 새로운 사회시스템·복지시스템의 구축이다. 소셜워크야말로 그러한 「새로운 사회발전의 촉매」이다.

일본에서는 전후 국민의 소득보장을 축으로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면, 국민이 안고 있는 생활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컸으며, 지역복지와 소셜워크를 전개 가능한 시스템 만들거리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3월 31일에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앞으로의 지역복지의 방법에 관한 연구회」에서 『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지」를 요구하며— 주민과 행정에 의한 새로운 복지—』란 보고서가 제출 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자립생활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이 정비한 포털서비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근린주민이나 자원봉사에 의한 인포멀케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코디네이트 기능(커뮤니티소셜워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고가 아시아형 소셜워커의 기본이며, 그 양성교육이 아시아형 소셜워크 교육의 글로벌스탠다드로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Ⅲ. 일본의 사회복지전문교육의 사고방식과 구성

(1) 대인원조로서 소셜워크 실천이 요구되는 사회적 생활과제시스템

일본의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 전후 크게 3가지의 과제가 있다. 첫번째는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와 대인원조로서의 소셜워크가 미분화된 채 교육되어, 사회복지교육으로서의 공통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두번째는 사회복지제도·정책의 교육·연구와 대인원조로서의 사회복지실천방법의 교육·연구가 격리 되어 있었다는 것, 세번째는 케어워크와 소셜워크가 미분화되어 교육에서도 현장에서의 실습에서도 두 가지의 기능이 혼재하여 발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잘 지적 된 것은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의해 케어워커의 중요성과 그 업무는 잘 알겠으나, 소셜워크의 기능은 잘 모르겠으며, 그 업무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안고 있는 생활문제는 이전과 같이 사회서비스의 정비, 특히,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사회보장을 정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신체적 개호나 가사원조를 통해 해결 되는 것도 아니다.

국제적 소셜워크의 정의가 “웰빙 상태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인간의 행동과 사회시스템에 관한 이론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그 환경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접점에 개입하고, 사람들의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고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 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한 사회서비스의 정비는 아니다. 소셜워크는 생활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생활문제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그 사람이 생육력과 생활환경, 사회환경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사회관계의 객체적 측면에만 착안하는 일반적인 사회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들의 정책·제도를 활용하면서 그 사람의 주체적 측면에 관한 개별적 원조가 중요하다.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대인원조로서의 소셜워크 분야의 예시적 주요 사항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정신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 치매고령자의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관계와 생활기술·가정관리능력에 대한 지원, 도는 성년후견인제도, 일상생활지원사업(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제도 활용에 관한 소셜워크 지원.
- ② 양육불안이나 아동학대의 위기에 처한, 근린에 소셜서포트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핵가족부모에게 소셜워크 지원.
- ③ 재주외국인으로 생활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소셜워크 지원.
- ④ 비행청소년이나 범죄형량이 남아있는 자의 사회생활지원과 소셜워크 지원.
- ⑤ 재가의 난치병환자와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소셜워크 지원.

이러한 생활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도적인 사회서비스의 활용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직접적이고 농밀한 개별대인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요구되는 소셜워크 기능은 어느 시스템에서 어느 기관이 실시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그런 소셜워크 기능을 전개 가능한 곳은 없다. 게다가 그런 소셜워크를 어느 기관의 어떤 자격을 가진 직원이 담당하느냐도 명확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으로 인정된 소셜워커로 생각되지만, 그 사회복지사도 업무독점으로서 직무나 근무기관이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상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런 기관에 임용된 사회복지사가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 가능한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2) 지역자립생활지원의 종합케어와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일본 사회복지교육은 그 시대의 사회복지 과제를 반영하고 몇가지의 시기 구분과 그것에 합당한 내용으로 분류화 가능하나 큰 영향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것은 1970 년~1990 년간의 입소형사회복지시설 설비 시대의 속성분야별 단신자에 대한 원조의 방법이다. 제한된 공간에서 같은 속성의 단신자의 집단생활을 전제로한 원조의 방식은 지금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2000 년 사회복지법의 개정이후에는 지역자립생활지원이 사회복지 메인스트림이 되어, 사회복지교육의 내용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자립생활지원의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복지교육의 과제는 이하 3 가지 포인트에서의 종합케어를 시야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원조와는 달리 재가에서의 지원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뿐만아니라, 가족이나 근린에 의한 소셜서포트네트워크의 유무도 생각한 종합케어가 필

요하게 된다.

두번째, 1996년에 문부성(당시)의 「21세기의 의학·의료간담회」의 제2차 보고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의 재가복지서비스로 대표되는 의료·보건·복지의 연계가 필요하고, 관계전문직종의 팀어프로치에 의한 종합케어가 요구된다. 영국에서는 인터프로페셔널에듀케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세번째, 사회복지제도로써 제공되어진 포털서비스와 근린주민 등에 의해 제공되어진 인포털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케어매니지먼트하고 소셜워크를 전개하는 커뮤니티소셜워크라는 사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복지교육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습의 방법과 사회복지원지기술연습의 방법을 보다 임상성이 높은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대량생산적인(mass production) 교육 방법을 개혁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과제이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보호도 생각하면서 임상성 높은 교육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또한 일본과 같이 「대학전입시대」에 있어서, 또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그를 반영하는 것인지 대학 수험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임상성이 높으면서 소인수로 실시하는 교육형태가 대학의 경영상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인지 큰 과제이다.

(3) 사회복지사제도의 확립과 사회복지사교육의 변천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본의 사회복지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법 및 개호복지사법」이 작년 11월에 20년만에 개정되었다. 개정포인트는 사회복지사의 정의·업무 내용이 개정되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의사 기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관계자(「복지서비스관계자 등」이라고 함)와의 연락 및 조정」의 기능이 더해진 것,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로서 ① 복지서비스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 ② 복지서비스 및 이에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 기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또한 적절히 제공 되도록 지역에 맞는 창의와 공리를 하면서 「복지서비스 관계자 등」과의 연계를 유지할 것, ③ 업무 내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에 힘쓰는 것이 명기되었다.

또한 일본의 국가자격이며, 일본 소셜워커로 간주되는 사회복지사의 양성커리큘럼도 그에 연동해서 크게 개정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생활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상담원조기능 뿐만아니라, 의료·보건서비스 등 다양한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조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실태에 따라서 창의공리하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이 요구되어졌으며, 일본의 소셜워커인 사회복지사의 커리큘럼은 종래의 노인복지제도, 장애인복지제도, 아동복지제도 등의 속성분야별 사회복지 제도로 구성하는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지역복지에 관한 과목과 소셜워크에 관한 과목을 주축으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크게 전화했다.

개정커리큘럼의 기본구조는 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인원조로서의 상담원조지원에 관한 지식과 기술과 ② 개인의 존엄, 인간성의 존중을 보증하는 지역자립생활을 가능한 하게 하는 지역복지의 이념, 시스템과 그 운영, 개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2가지를 중핵으로 ③ 지원할 때 활용해야할 제도,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④ 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사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평가·분석하는

데 필요한 인체, 심리, 사회구조에 관한 지식, 기술을 배운다. ⑤ 이러한 지식·기술을 임상적으로 훈련하는 장소, 기회로서 사회복지실습·연습이 셋트로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200 일, 호주에서는 140 일의 실습이 필요한데 비해, 일본은 적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장의 실습지도 직원의 자격과 대학 등의 사회복지실습·연습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임상적 사회복지실습·연습의 질을 담보하고자 했다. 이 커리큘럼개혁에 의해 보다 사회복지계의대학의 사회복지교육은 크게 변할 것이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이나 사회복지사회 등의 전문직단체의 활동도 크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987 년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모든 사회복지계대학의 사회복지교육이 사회복지전문직교육으로 바뀌었다. 거기에서는 사실상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연구와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연구로 분리되어, 많은 사회복지계대학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의 축척과 발신은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큰 전진이며, 사회보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소셜워크의 입장에서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추구의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이고, 소위 “빈곤시스템” 과 그 외연상의 시스템에 빼앗겨 왔던 질곡으로부터의 사회복지연구의 해방의 기회이다. 주민이 안고 있는 생활문제의 해결을 생각할 경우, 사회정책에 관한 제도가 방향만을 문제시 하는 게 아니라, ① 생활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의 주체적 측면과 ② 생활을 위협하는 생활환경과 사회제도의 문제와 ③ 그 양자의 관계라는 3 자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의 살아가는 의욕과 희망을 소중히 하면서, 생활개선과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소셜워크 실천과 그 연구야말로 지금 요구되고 있다.

IV. 아시아형 소셜워크교육의 글로벌스탠다드의 구축

(1) 국제화시대의 인간보장과 소셜워크

그런데 지금까지 서술해 온 내용은 일본 국내상황에 맞춘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였으나, 그것도 세계적 흐름속에서의 검토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2004 년에 국제소셜워크연맹과 국제사회복지교육학 교연맹은 소셜워크교육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설정했다. 그 내용에 따라 바로 일본 사회복지교육이 좌우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후 국제화가 점점 더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일본 국내의 재주외국인이 안고 있는 생활문제의 소셜워크와 동시에 일본이 소셜워크면으로 세계의 지구규모에서의 인간보장의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국제협력·국제공헌이 가능한지, 해야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는 1일 1달러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약 13억 있다고 하고, 개발도상국가는 종래의 경제발전을 전제로한 「복지국가」 발전 모델에 의해 사회발전을 시키기는 곤란하다. 거기에는 유네스코가 1985 년에 제기한 『학습권선언』의 취지대로 주민을 임파워먼트하고 주민이 학습능력을 높여 행정과 주민이 협동해서 지역만들기, 사회만들기를 해 가는 새로운 사회철학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전개 시키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소셜워크의 기능이다. 단, 일본의 경우, 아무래도 사회복지행정이 정밀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셜워크는 제도화 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왔으나, 주민의 니즈에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서비스 를 개발한다는 생각이 약했다. 금

후, 일본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주민과 함께 개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소셜워커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적레벨에서의 소셜워크 실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유니세프나 JICA 의 직원으로 또는 청년해외협력원으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이 있는 것처럼, 금후 더욱 더 국제적으로 소셜워커가 요구 되어진다.

현재, 국제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과 국제소셜워커연맹은 사회복지교육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는 약 185 개국의 약 300 만명의 재주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 분들의 생활지원을 위해서도 소셜워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국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교는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서 환태평양사회복지세미나를 20 주간 개최해 왔다. 본교로서는 유럽, 아메리카와는 다른 사회복지실천 모델의 구축을 시야에 둔 아시아복지사회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환태평양사회복지세미나를 보다 발전시킬 역할이 기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학부레벨의 교육에 국제소셜워크에 관한 과목을 설치하고 학생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EU 의 볼로냐선언과 아시아형 글로벌스탠다드

유럽형, 아메리카형과는 다른 아시아국가의 문화에 근거한 소셜워크의 발전이 아시아국가의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며, 지금 그것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아시아국가의 문화·종교 등을 상호 존중하면서 아시아형 소셜워크교육의 글로벌스탠다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1999 년에 29 개국의 교육장관이 이탈리아의 볼로냐에 모여, 유럽의 고등교육권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를 초월한 상호 자격으로서 승인 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학위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동력의 이동에 지장이 없게 하는 볼로냐선언을 채택했다. 그후, 볼로냐프로세스를 만들고 고등교육의 상호호환성과 그것에 따른 소셜워커의 이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금후 아시아국가에 있어서도 자유무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상호호환이 요구되어진다. 그러한 것도 시야에 둔 금후 「아시아형 소셜케어교육 (소셜워크와 케어워크) 의 글로벌스탠다드의 확립과 국가자격의 호환성」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국가의 교류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EU 제국이상으로 문화·종교도 다양하다. 그렇지만, 국제소셜워크교육 학교연맹의 아시아태평양지역조직 (APASWE) 을 모체로하여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번역:중부대학 소진이)